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부산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유진승

전화 051-606-4164

보도자료

2024. 5. 1.(수)

14억원대 고용지원 보조금 등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수사결과 - 보조금 브로커 1명 구속 기소, 부정수급 사업주 등 40명 및 명의대여 공인노무사 등 3명 불구속 기소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부산지방검찰청 공공·국제범죄수사부(부장검사 김형원)는 부산·울산·경남 지역 고용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수사하여, 자격없이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14억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도록 알선한 **보조금 부정수급 브로커를 구속 기소**하고, 위 브로커를 통하여 **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등 40명과 그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한 공인노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**하였습니다.
- 브로커 A는 수도권 지역 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부정수급 방법을 숙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'19. 11.경 컨설팅 업체를 개업 후 사업주들에게 접근하였고, 다수의 업체들과 공모하여 허위근로자 채용이나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고용지원 보조금 약 14억 원 상당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후 **1억 4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**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
- 한편, A는 부정수급 과정에서 마치 H노무법인의 사무장으로 합법적으로 노무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노무법인 명의를 빌려 노무법인 명의의 용역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,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까지 작성·발급하였고, 이 과정에서 **공인노무사들의 가담 사실도 밝혀**졌습니다.
- 향후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**범죄수익 추징에 최선을 다**하고, 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, 관할 세무서의 포탈세액 환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1

주요 피고인

- A(T 컨설팅社 대표, 보조금 부정수급 브로커, 구속)
- B, C(H노무법인 각자대표, 공인노무사, 각 불구속)
- D, E, F(부정수급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주, 각 불구속)
- G 등 37명(부정수급 사업주, 각 불구속)

2

주요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 A는
 - '20. 1.경 ~ '23. 8.경 34개 업체 사업주와 공모 또는 단독으로, 허위 근로자 채용 등의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약 14억 원 상당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고,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총 250건의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을 대행하여 1억 4,000만 원 상당 수수 [사기, 보조금법위반, 고용보험법위반, 공인노무사법위반]
- 피고인 A, B, C는 공모하여
 - '22. 3.경 ~ '22. 11.경 노무사인 B, C가 A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가로 A에게 H노무법인 명칭을 대여하고, H노무법인을 공급자로 한 약 6,800만 원 상당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하는 등 1억1,000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, 매입세금계산서 허위수취[공인노무사법위반, 조세범처벌법위반]
 - ※ A는 위와 별도로 D, E, F 사업주들과 공모하여 약 20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도 발급
- 피고인 D, E, F, G 등 기타 부정수급 사업주 40명은,
 - '20. 6.경 ~ '23. 8.경 A와 공모하여 허위 근로자 채용 등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각자 약 600만 원 ~ 1억 7,000만 원 상당 편취 [사기, 보조금법위반, 고용보험법위반]

3

보조금 편취 수법

- 피고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업 여건 개선 및 코로나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근로자채용, 기존근로자 신규채용 가장 등 **다양한 방법으로**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지원금,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**고용지원 보조금***을 부정수급하였음
 - *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, 특별고용촉진장려금, 청년채용특별장려금, 청년추가고용장려금, 고용유지지원금

부정수급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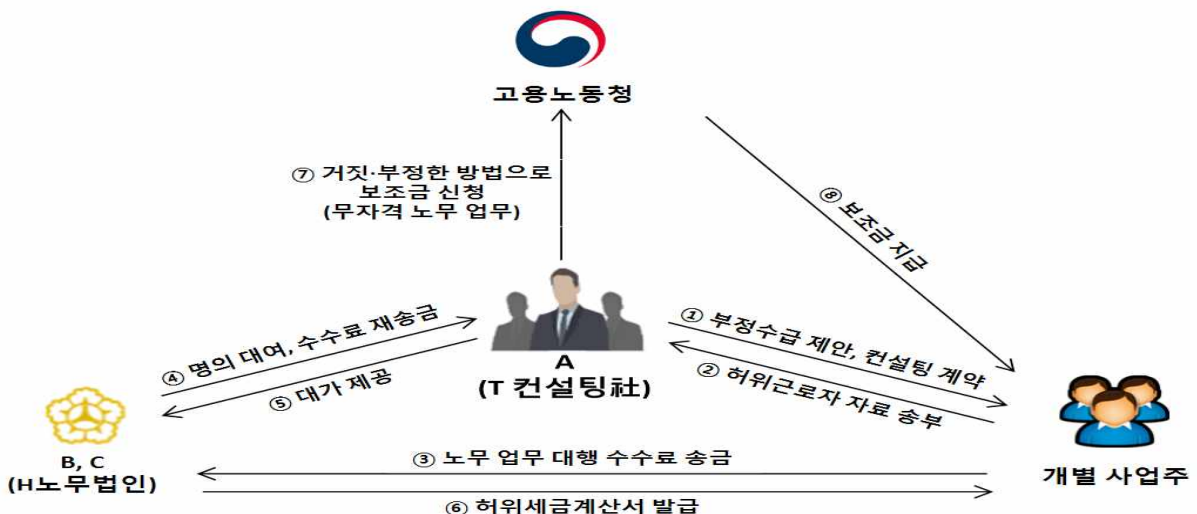
- ① 허위근로자(실제 근로하지 않는 자를 허위채용) ② 급여액 조작(계약서보다 실제 근로 시간이 적음에도 계약서에 기재된 만큼 급여이체 후 다른 계좌나 현금 등으로페이백받음), ③ 기존 근로자 신규채용 가장(이미 아르바이트, 프리랜서, 계약직 등으로 근로하고 있어 신규채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신규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작성), ④ 관련사업장 근로자 신규채용 가장(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2개 이상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그 사업체간 이직한 것에 불과한 자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지원금 신청), ⑤ 피보험자수 조작(실제 근로하지 않는 자를 고용 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5인 이상 요건 충족), ⑥ IT직무 가장(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 대상 근로자가 다른 직무에 종사함에도 IT직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작성 및 허위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 제출)

4 수사경과

- '23. 11. ~ 12. 사경과 협력하여 **A 구속, 송치 후 보완수사 및 기소**(13억 상당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)
 - ※ 부산시경에서 A 구속 송치 및 개별 사업주의 사기 등 약 30건 순차 송치
- '23. 12.~24. 2. A의 추가 보조금 부정수급,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혐의 인지
- '24. 2.~3. 부정수급 업체·노무법인 세금계산서 자료 압수, 계좌추적
- '24. 3.~4. B, C 등의 노무법인 명칭대여,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및 개별 사업주의 추가 부정수급 혐의 인지
- '24. 4.29.~5.1. **A 추가기소, B, C 및 사업주 등 43명 불구속 기소(총 10명 검찰 인지)**

※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는 [별첨] 참조

범행구조



5

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가.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브로커 구속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규명

- 노동청의 기초 조사 및 정보공유, 경찰에서의 브로커 주거지 등 압수수색 및 개별 사업주 조사, 검찰의 적극적인 보완수사 협의 및 영장청구 등 송치 前 단계에서부터 검찰, 경찰, 노동청이 긴밀히 협력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음
- 그 결과 신속히 보조금 브로커를 구속하여 증거인멸 및 사업주들의 진술 번복을 방지하고, 브로커가 무자격 노무 업무를 대행하면서 34곳의 사업주들과 공모하여 14억 원 상당의 고용지원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함

나. 검찰 직접수사를 통해 공인노무사 등의 범행 가담 사실, 브로커 및 일부 사업주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사실 등 총체적 비리 확인

- 검찰은 사건 송치 후 계좌추적, 세금계산서 자료 압수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브로커의 부정수급 과정에 공인노무사들이 노무법인 명칭 대여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
- 그 외에 사업주들이 부정수급을 받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, 근로자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뿐만 아니라 사업장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업체 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·수취하는 등 브로커, 공인노무사, 사업주가 결합된 총체적 비리를 밝혀냄

다.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

-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브로커 A가 불법노무행위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A 명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속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재산을 동결 하였음

라. 향후 계획

- 관할 노동청·세무서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들을 상대로 부정수급액 환수절차를 진행하고, 노무법인 등 세금포탈 의심업체에 대한 포탈세액 환수절차도 철저히 진행 예정
-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엄정히 대응 하겠음 ☑

[별첨]

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	처분 결과
1	A (T 컨설팅사 대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'20. 6. ~ '23. 8. 사업주와 공모(34개 업체) 또는 단독으로, 허위 근로자 채용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약 14억 원 상당 국가보조금 편취[사기, 보조금법위반, 고용보험법위반]- '20. 1. ~ '23. 8.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총 250건의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하여 1억 4,000만 원 상당 수수료 지급 받음[공인노무사법위반]- '22. 3. ~ '22. 11. 노무사 B, C와 공모하여, T 컨설팅사가 노무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한 업체들에 대해 H노무법인을 공급자로 약 6,800만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[조세범처벌법위반]- '20. 8. ~ '22. 9. 단독으로 또는 3개 업체 사업주들(D, E, F)과 공모하여 K법인 상대로 합계 약 20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[조세범처벌법위반]	2023. 12. 22. 구속 기소 2024. 4. 30. 불구속 기소
2	B, C (H노무법인 각자대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'22. 3. ~ '22. 11. A에게 H노무법인 명칭 사용을 허락하고, A와 공모하여 합계 약 1억 1,000만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, 수취[공인노무사법위반, 조세범처벌법위반]	2024. 4. 30. 불구속 기소
3	H 노무법인		
4	D, E, F (부정수급 및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사업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'21. 7. ~ '22. 4. A와 공모하여 허위 근로자 채용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각각 약 800만 원 ~ 2,800만 원 상당 국가보조금 편취[사기, 보조금법위반, 고용보험법위반]- '21. 5. ~ '22. 9. A와 공모하여 K법인에 각각 합계 약 3억 원 ~ 5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[조세범처벌법위반]	2024. 4. 30. 불구속 기소
5	G 등 기타 개별 사업주 37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'20. 6. ~ '23. 8. A와 공모하여 허위근로자 채용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각각 약 600만 원 ~ 1억 7,000만 원 상당 국가보조금 편취[사기, 보조금법위반, 고용보험법위반]	2024. 4. 29. ~ 2024. 5. 1. 불구속 기소